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정의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 입소자의 권리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노인권리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학대 노인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

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입소어르신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의 인권보호 · 윤리지침

제 1 조 (목적)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의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은 인도주의 정신 및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며 조직구성원을 결함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이 윤리지침은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의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준수에 대한 책임)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과 임직원은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윤리책임소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루어 간다.

제 4 조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윤리)

(의사소통)

1.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임직원들은 입소자에게 존댓말과 존칭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반말은 친밀감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신중한 언어사용을 하도록 한다.
2. 입소자와 대화 시에는 눈을 맞추고 적절한 어조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청력 감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에는 큰 목소리로 고향치듯 하면 듣기 힘들고 말은 불분명해 지므로 대상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하고 필요시 몸짓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혼돈상태의 입소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는다거나 접촉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접촉을 진행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혼돈상태의 입소자에게도 욕구가 있음을 확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택의 자유)

4. 입소자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특별히 케어 제공시 이, 미용이나 손톱정리 등에 관련된 개인취향이나, 착·탈의 시 옷의 선택, 예배로의 인도에 대한 거부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며 건강상태와 안전에 문제가 없을 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또한 존중한다.

(비밀보장)

5. 입소자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임직원 뿐 아니라 실습생이나 봉사자 등에게도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한다.
6. 직무의 사례관리나 초기면접등과 같은 입소자나 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입소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직무와 관계없는 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입소자에 대한 토론을 벌이지 않는다.
7.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8. 입소자에 대한 기록이나 일지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혹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사생활보호)

9. 입소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신체적 접촉, 화장실 이용등의 개인적 용무, 우편물이나 전화사용 등의 사생활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10. 입소자의 사적 공간을 보장한다. 건강상태와 안전이 허락되는 한 개인 소지품의 소장을 존중하며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11. 홍보물영상이나 회지 등에 쓰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는 사전에 입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부 방문객의 촬영이나 녹음 등의 행위도 묵인하지 않으며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2. 입소자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을 보관할 때 관리자 및 보관장소를 정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

(자존감유지)

12. 입소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무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13. 입소자에 대한 문제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14.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이나 문을 닫아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

15. 입소자는 제반 요양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며 단, 그 결정이 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6.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따른 개별적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입소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신체구속)

19. 입소자들의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별히 치매환자의 경우 억제대나 감금 형식의 신체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혹 대상자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건강상태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학대)

20. 자기방임 : 입소자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21. 언어 · 정서적 학대 : 입소자가 실수, 또는 혼돈상태 입소자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위협·협박하는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
22. 성적학대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3. 방임 : 입소자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24. 신체적 학대 : 입소자가 원하거나 또는 재활이 목적인 경우 외에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참여)

25. 입소자와 그 가족은 입소자의 서비스욕구, 서비스계획, 상태의 변화에 따른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26. 입소자가 거부하는 치료나 케어는 행해질 수 없다. 그러나 건강상태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대상자의 선택능력의 부재인 경우 그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스피스)

27. 임종간호가 필요한 입소자의 가족이 호스피스 요양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한다.

(고충처리)

28. 입소자는 케어나 치료에 따른 불만을 토로, 불만에 관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기에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과 고충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금품수수)

29. 입소자나 그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제 5 조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실천지침)

1.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후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피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3. 지역노인복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도군 노인복지발전에 공헌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개 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유형과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유 형	정 의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흥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찢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 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외상없음 ☒부종 ☒멍들 ☒할퀴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 졸린 흔적 ☒목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뺨(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 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애 ☒ 뇌사 ☒ 사망 ☒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향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 상태: 우울, 공포, 혼돈 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속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흥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에 못 들어오게 함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의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 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 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약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강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 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원인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다음 아래사항은 학대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다.

1. 의존성의 증가
2. 복합적인 의존성
3. 정신적 문제
4. 가족 내의 학대의 역사(경험)
5. 빈약한 가족관계
6. 환경적 문제
7. 경제적 문제
8. 행동, 성격 문제
9. 부양자 문제

5 노인학대예방 지침

- ①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②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은 본원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③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④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인권보호지침을 비치하고,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반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상급자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종사자는 입소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⑦ 치료나 영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⑧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⑨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⑩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입소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

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 ⑪ 입소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직원이나 종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⑫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⑬ 본 요양원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6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노인학대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시설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설장과 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⑥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⑦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차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⑪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 될 경우 시설장, 국장 및 시설장이 지정한 시설 내부인사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등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⑫ 시설장은 현장조사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⑬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⑭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⑮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⑯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

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 시 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사·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①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②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③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④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학대예방협력체계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 ① 시설장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② 시설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입소 어르신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가.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 ①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③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사·도

- ①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②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 ③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사·군·구

- ①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 ②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 ③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 ④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⑤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나. 노인복지시설

- ①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 ②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 ③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 ④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 ⑤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⑥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다. 관련기관

- ① 노인학대예방센터
- 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 ③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 ④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 ⑤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라. 의료기관

- ①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
- ②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③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마. 법률기관

- ①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노인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②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
의 격리 등

※ 노인학대 발생 신고

1577-1389